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4. 10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97. 4. 10

다. 상 정 일 자 : 97. 4. 17(제5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 안 자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나. 제안사유

ㅇ 주민등록 온라인제 시행으로 읍면장만 열람토록 되었던 것을 군수도 열람토록 토록하는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3(96. 6. 30) 신설로 인함

다. 주요내용

ㅇ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중 군수에게 신청한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는 군수가 열람한다"를 신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민병항)

ㅇ 동 조례 개정안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에 관한 사항중 군수에게 신청한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는 군수가 열람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7 - 42

제출년월일 : 1997. 4. 10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ㅇ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45조의3 ('96. 6. 30) 신설로 인함

2. 주요골자

ㅇ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중 군수에게 신청한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는 군수가 열람.교부한다를 신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제2조(권한의 위임) . . . . 다만,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중 군수에게 신청한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는 군수가 열람.교부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